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근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며, 정부의 법령 및 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의 장을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법제처장 추가
- 나.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,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7. ~ 3. 0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, 법제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부위원장을”을 “상근 부위원장을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전단 중 “차관”을 “차관 또는 차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복수차관”을 “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”으로, “차관으로”를 “차관 또는 차장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이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(이하 “당연직위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, <u>법제처장</u> ----- -----.			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위원회에 <u>부위원장을</u> 두며,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.	⑤ ----- <u>상근 부위원장을</u> ----- ----- -----.			
제8조(저출산·고령사회운영위원회) ①·② (생략)	제8조(저출산·고령사회운영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	
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<u>차관</u> . 이 경우 <u>복수차관</u> 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<u>차관</u> 으	1. ----- ----- <u>차관 또는 차장</u> . --- <u>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</u> --- ----- <u>차관 또</u>			

<u>로</u> 한다. 2. · 3. (생 략) ④ ~ ⑥ (생 략)	<u>는 차장으로</u> ---.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91